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2324호로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예비비 지출내역

### 1) 801-01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316,200	313,800	0	2,40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인프라구축	풍수해 피해소상공인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16,200	313,800	0	2,400	2022년 8월 집중호우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801-01)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일반 예비비 지출액은 3억 1,38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40만원임.

### 2)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1,222,022	783,276	0	438,746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인프라구축	금천구소상공인지원금	기간제근로자등수보	27,002	26,801	0	201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사업 실시 결의에 따라 자원 마련
			사무관리비	4,000	0	0	4,000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327,500	119,000	0	208,500	
		풍수해피해소상공인지원금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156,900	156,600	0	300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실행력강화	청년자립기반구축	사무관리비	6,620	1,375	0	5,245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사업 실시 결의에 따라 자원 마련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700,000	479,500	0	220,500	

-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재해·재난목적예비지 지출액은 7억 8,327만 6천원이며 지출잔액은 4억 3,874만 6천원임.

###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재난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비비 지출의 경우 정확한 편성의 결여로 불용된 경우도 있으며 향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야 할 것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